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79
----------	------

2013년 7월 3일  
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2013년 7월 3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진선 기술심사담당관)

### ○ 제안이유

서울시 및 시비지원 자치구 발주공사의 품질시험을 의무적으로 품질시험소에 의뢰토록 하고, 방침으로 적용하던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수수료 면제조항을 조례에 명문화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시, 시 직속기관·사업소 및 시비지원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우리 시 품질시험소에 의뢰 하도록 의

무화 규정 신설 (안 제3조제2항)

나.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관련 수수료 면제조항을 조례에 명문화 경우 (안 제15조제1호)

###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본 안은 품질시험소 활성화 방침(행정2부시장 방침 제411호, 2012.12.28)에 의거하여 서울시 및 시비지원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의 자재 등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서울시 품질시험소에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품질시험소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 그 동안 행정2부시장 방침(제4호, 2006.1.9)으로 적용해 오던 품질수수료 면제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현재 품질시험소는 약 50여 년간 축적된 품질시험 경험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자재를 시험할 수 있는 조직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나 품질시험소의 수수료 ([표1] 참조)가 민간전문기관보다 일부 높은 경우가 존재하고 시험의 철저한 공정성으로 인해 불합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시험의뢰자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의뢰를 해야 하는 불편함 등으로 인해 서울시 품질시험소 이용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 1] 품질시험소와 민간시험기관의 분야별 주요시험수수료 비교

시험항목		품질시험소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비고
토 질 분 야	준설토	함수비	58,560	-	27,500
	현장밀도		254,570	281,300	314,500
	평판재하(도로)		406,720	426,500	534,500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도	15,270	38,500	16,500
		마찰안정도	54,590	38,500	33,000
	흙	다짐	241,980	137,390	115,500
함수비		21,040	18,590	16,500	
재 료 분 야	철근	인장강도	69,530	38,550	38,500
	콘크리트벽돌	압축강도	40,910	22,000	35,750
	암석	압축강도	64,380	33,000	60,500
	인터로킹블록	휨강도	63,780	33,000	60,500
	타일	격임강도	30,870	22,000	38,500
화 학 분 야	폴리스틸렌 (단열재)	압축강도	15,760	22,000	16,500
	액체방수제	압축강도비	121,690	212,300	223,520
	합성고분자계방 수시트	인장강도 (무처리)	45,640	33,000	49,500
	개량아스팔트방 수시트	인장강도 (무처리)	56,160	33,000	49,500
	도포방수제	부착강도	100,910	157,300	174,020

(자료 : 서울시 품질시험소, 2012년 기준)

- 일례로, [표 2]의 최근 3년간 서울시 발주공사의 품질시험소 이용현황과 타 시험소 이용현황을 보면 품질시험소의 이용률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2] 최근 3년간 서울시 발주공사의 품질시험소 및 타 시험소 이용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말		비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합계	3,108	100	2,509	100	1,286	100	
품질시험소	2,413	77.6	1,340	53.4	660	51.3	
타 시험소	695	22.4	1,169	46.6	626	48.7	

(자료 : 서울시 품질시험소)

- 이에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15조제1호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감면해 주던 것을 2006년 1월 이후부터 행정2부시장 방침<sup>1)</sup>으로 서울시 발주공사에 한해 품질시험과 검사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 왔음.

[표 3] 연도별 품질시험 수수료 감면(면제포함) 현황

연 도	수수료 감면금액 (천원)	비 고
2006년	126,438	
2007년	234,715	
2008년	213,553	
2009년	330,517	
2010년	364,973	
2011년	260,454	
2012년	242,254	
2013년	97,921	5월말 현재

(자료 : 서울시 품질시험소)

-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표 3]의 연도별 수수료 감면금액 규모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듯이 시험수수료 면제 정책이 시행된 2006년 첫 해를 기준으로 2007년에 품질시험소 수수료 감면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용률이 제고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서울시 발주공사”, “서울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발주공사”, 그리고 “시비지원 자치구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타 시험기관에 우선하여 품질시험소장에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1) 『품질시험 활성화 방안 검토』 행정2부시장 방침 제4호, 2006. 1. 9

- 현행 제15조의 “수수료 감면” 규정을 2006년부터 적용 중인 관련 방침기준과 같이 “수수료 면제”로 변경하면서, 현행 서울시 발주공사 뿐만 아니라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도 시험수수료를 면제토록 확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제반 공사에 대해 서울시 산하 품질시험소를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품질시험의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품질시험소의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는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공사로만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안 제3조제2항의 품질시험소 우선 의뢰 의무부여가 타 시험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자치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의뢰는 다른 시험기관 등에 우선하여 시험소장에 게 한다. 다만, 자치구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시험소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 제목 중 “감면”을 “면제”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감면”을 “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를 “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은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은 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②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등이 시험소장에게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시험 완료 예정일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건설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2호에</p>	<p>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자치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의뢰는 다른 시험기관 등에 우선하여 시험소장에게 한다. 다만, 자치구의 순수한 자체재원 사업과 시험소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따른 감리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에게 그 의뢰 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입회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5조(수수료 <u>감면</u>)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u>감면</u>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u>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li> <li>2. 기동반이 채취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경우</li> <li>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제15조(수수료 <u>면제</u>) ----- ----- ----- <u>면제</u>----- 1. <u>시,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와</u>-----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p>